【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지원내용 설명자료】

사업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(컨설팅)

- □ (사업목적)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
- □ (지원규모) '24년 약 150억원*(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)
 - * 일반형 바우처: 지역자율형 바우처(융복합컨설팅 10억원 포함)
- □ (지원대상)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*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상이
- □ (지원내용)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를 지원기업(수요기업)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
 - * 내역별 세부 지원내용 상이

<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>

내역명	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일반바우처 (지역자율형)	 (신청자격) 제조업 영위 소기업(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) → <완화>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(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, 보조율만 차등) 1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 중소기업 기준의 분류기호 "C" 업종 적용 2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3] 소기업 기준의 분류기호 "C" 업종 적용 3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적용 (지원내용) 제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일반바우처 3개 분야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, 10개 프로그램의 바우처 및 융복합컨설팅 지원 * 신청사항: 일반바우처는 분야별 1개씩,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(지원규모) 기업당 최대 50백만원(정부지원 보조율 40~85%) * 3년 평균 매출액: 3억원 이하(85%), 3~10억원 이하(75%), 10~50억원 이하(65%), 50~120억원 이하(45%), 120억원 이상(40%)

- □ **(추진체계)** 전담기관(중진공), 운영기관^{*}, 수행기관(서비스 제공기관)
 - * (운영기관) 한국경영지도사회/한국스마트협회(컨설팅), 한국산학연협회(기술지원), 중소기업유통센터(마케팅)

□ (추진절차)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주요 추진절차(기존절차)

① 사업공고		② 신청·접수	0	③ 서면심사	•	④ 진단·평가
중기부	9	혁신바우처 플랫폼		전담기관(중진공)		전담기관(중진공)
						U
⑧ 바우처 정산		⑦ 바우처 발급 서비스 제공		⑥ 협약체결		⑤ 최종선정
전담/운영기관 ↔ 지원기업	C	전담기관 ↔ 지원기업 ↔ 운영/수행기관	C	중진공 ↔ 지원기업	C	전담기관 (사업운영위원회)

- (신청·접수) 중진공 혁신바우처 플랫폼(www.mssmiv.com)
- (서면심사) 신청자격 요건, 지원(제외)대상 여부, 사업추진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
- (진단·평가)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
- (최종선정) 중기부·중진공·외부전문가 구성의 '사업운영위원회'를
 통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(참여기업) 선정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- 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
- ☞ 신청자격 요건 완화 : 참여기업이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면 가능
 - * (기존) 제조업 영위 소기업(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) → (우대)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(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)
- ☞ 선정절차 간소화 : 참여기업이 신청 시 '④진단·평가' 단계의 현장평가 면제

사업2

수출바우처 (수출지원 /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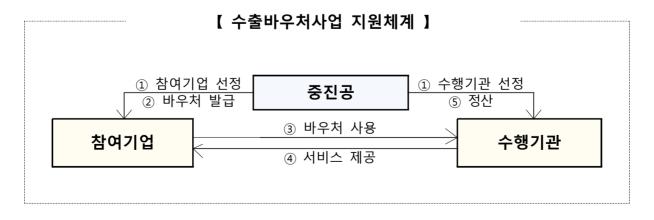
- □ (사업목적) 내수·수출 중소기업 규모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 선도기업 육성
- □ (지원규모) '24년 약 100억원(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)
- □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수출규모별 지원대상을 구분하고, 직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

【 세부 지원대상 및 한도 】

(단위 : 백만원)

지원트랙	지원 대상	지원한도	국고보조율
내수기업	수출액 '0~1천불 미만'	30	
수출초보	수출액 '1천~10만불 미만'	30	(매출액 기준)
수출유망	수출액 '10~100만불 미만'	40	100억원 미만 : 70% 100~300억원 : 60%
수출성장	수출액 '100~500만불 미만'	70	300억원 이상 : 50%
수출강소	수출액 '500만불 이상'	100	

- □ (지원내용) 디자인 개발, 홍보, 바이어 발굴, 전시회, 인증 등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(수출바우처)으로 지원
 - 선정기업에 "수출바우처" 발급 →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, 수행 → 소요비용 정산



- □ (추진체계) 전담기관(중진공), 운영기관*, 수행기관(서비스 제공기관)* (운영기관) 중진공, 지방청
- □ (추진절차)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주요 추진절차

① 사업공고	3	② 신청·접수	O	③ 서류심사	0	④ 진단·평가
중기부		수출바우처 사이트		운영기관 (중진공, 지방청)		운영기관 (중진공, 지방청)
	-				•	U
		⑦ 바우처 발급				
⑧ 바우처 정산		서비스 제공		⑥ 협약체결		⑤ 최종선정

- (신청·접수) 중진공 수출바우처 사이트(www.exportvoucher.com)
- (서류심사) 신청자격 요건, 지원(제외)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 진행 후 현장평가 대상 선정
- **(진단·평가)** 수출역량(수출성장단계) 및 업종(제조업 및 서비스업)에 따른 현장진단·평가 실시
- (최종선정) 운영기관(중진공·지방청)이 제출한 선정명단을 전담기관
 (중진공)의 '공동운영위원회'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(참여기업) 선정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- 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중 수출바우처 신청기업 간 제한경쟁
- * 기업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트랙(내수/초보/유망/성장/강소)을 선택하여 신청하고, 평가를 통해 할당예산(100억원) 한도 내 지원기업 선정

사업3 중소기업 정책자금(융자) (정책자금)

- 【사업목적】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·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 대상 안정적인 자금 공급으로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
 【지원규모】 '24년 약 2천억원(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)
 【지원대상】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 * 사업별 세부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'24년 융자계획 공고 추가 확인 요망

 【지원내용】지원기업에게 혁신창업사업화, 신시장진출지원, 신성장기반, 재도약지원, 긴급경영안전 등의 자금을 융자 또는 이차보전 *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'24년 융자계획 공고 추가 확인 요망
 【추진체계】전담기관(중진공)
- □ (추진절차) 중소기업 정책자금(융자) 공통 추진절차

① 융자공고		② 융자신청 (온라인)		③ 정책우선도 평가 (사전평가)		④ 서류작성 (온라인)
중기부, 중진공	0	중진공 홈페이지 (기업정보 제출 등)	Э	전담기관(중진공) (심사기회 부여 결정)	•	중소기업 (융자 필요서류 제출)
	_		'		•	U
⑧ 사후관리		⑦ 대출실행		⑥ 융자결정		⑤ 기업평가
전담기관(중진공) ↔ 지원기업	C	직접대출, 대리대출, 투자조건부 융자 등	U	전담기관(중진공) (가능여부 및 금액)	C	전담기관(중진공) (현장방문 or 비대면)

- **(신청·접수)** 중진공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
 - *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·지부 선택 후 월별·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및 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, 사업전환자금/구조 개선전용/긴급경영(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) 및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

- (융자신청)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희망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전담기관(중진공)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*
 - * 신용정보 동의, 사전 기업진단, 기업정보 등
- (정책우선도 평가) 지역본부·지부별 예산, 신청물량을 고려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
 - *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 분야, 고용창출, 기술·경영혁신, 글로벌화, 정책우대,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(우수기업 및 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)
- (서류작성)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 전담기관(중진공)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서류 제출
- (기업평가) 전담기관(중진공)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 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*(기업진단 포함) 수행
 - * 기술성, 사업성, 미래성장성, 경영능력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(Rating) 산정
- (융자결정) 기업심사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 결정
- o (대출실행) 중진공 직접 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
 - * (중진공) 직접대출, 성장공유형(전환권), (취급은행) 대리대출, 이차보전
- (사후관리) 부정사용 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 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 실시
 - * 대출자금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,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
 - **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은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☞ 제출서류 간소화(미정) : 기업심사(기술성 평가) 시 제출서류의 종류를 29개에서
 약 15개 정도로 간소화 예정 * (기존) 29종 제출 → (우대) 15종 간소화

사업4 스마트공장 (제조혁신 /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)

- □ (사업목적) 제조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스마트화 기반 강화, 생산성 향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향상 도모
- □ (지원규모) '24년 약 330억원(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, 정부일반형 165개 과제)
- □ (지원대상) 스마트공장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
 - *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상이
- □ (지원내용)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하여 첨단기술 적용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,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지원
 - * 내역별 세부 지원내용 상이
 - 스마트공장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 고도화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및 연동 지원

<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>

내역명	신청자격 및 지원내용	비고
고도화1	• (신청자격)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인 제조 중소·중견기업 * 중간1 :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및 분석 • (지원규모) 최대 2억원 이내, (사업기간) 9개월	정부지원금 비중 50% 내
고도화1 (동일수준)	 ·(신청자격)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제조 중소·중견기업(1회한함) * 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 ·(지원규모) 최대 0.5억원 이내, (사업기간) 6개월 	(민간부담금 50% 이상)

- * (중간1)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·분석, (중간2)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
- □ (추진체계) 전담기관(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), 제조혁신센터(테크노파크)

□ (추진절차)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주요 추진절차(기존절차)

① 사업공고	3	② 신청·접수		③ 요건검토		④ 서면평가
중기부		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	O	제조혁신센터(TP)	0	제조혁신센터(TP) (평가위원회)
					-	U
⑧ 최종선정 및 협약/사업착수		⑦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		⑥ 기술성평가		⑤ 기획지원
전담기관/제조혁신센터 ↔ 도입기업·공급기업	C	제조혁신센터(TP), 원가계산기관	U	제조혁신센터(TP) (평가위원회)	C	도입기업·공급기업 (DX코칭단)

- (신청·접수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
- (서면평가) 사업계획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등을 서면 평가하여 최종 선정규모의 1.5배수 선발
- o (기획지원) 서면평가 선발과제 대상 사업계획 수립 지원(선택사항)
- **(기술성평가)** 사업계획서 기반 대면평가(발표평가)를 통해 고도화 지원 적합성 평가
- (현장확인)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여부 등 예산, 목표수 등을
 고려하여 현장확인을 통한 적/부 판정*
 - * (적/부 판정)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1개 이상 또는 부정사례 발견 시 탈락되며, 기획지원을 선택한 도입기업의 경우 기획지원 시 현장확인 병행 실시
- (최종선정) 평가결과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최종 선정·후보·탈락 대상기업 승인(중기부)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- 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
- ☞ 선정절차 간소화 : 지역별 상황에 따라 '④서면평가' 단계 면제 가능